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손해사정서 교부 동의서** |  |
|  | | |

|  |
| --- |
|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교부가 되지 않으며, 본 동의서는 손해사정서 교부를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 본 동의서의 개인(신용)정보는 당사 및 당사의 위탁회사와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은 이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입니다. 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 |

**1. 관련법규**

보험업법 제 189조 (손해사정사의 의무 등)

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,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.

보험업법 시행령 제 99조 (손해사정사의 의무 등)

1. 법 제 189조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.

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**2. 동의여부 및 수령방법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당사의 업무수탁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내어드립니다. 손해사정서 수령에 동의하십니까? | | | |
| 동의자 | 보험계약자 | 피보험자 | (대표)수익자 |
| 교부 동의여부 | @B2LosrptDlvrFg\_Isrt@ | @B2LosrptDlvrFg\_Isrd@ | @B2LosrptDlvrFg\_Bnfc@ |
| 민감정보 포함 동의여부 | @B2IsrtSstvInfoAgrFg@ | @B2IsrdSstvInfoAgrFg@ | @B2BnfcSstvInfoAgrFg@ |
| **\* 교부동의여부 동의 시 민감정보포함 동의여부 체크 가능하며 민감정보포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2항에 따라 민감정보 삭제 된 손해사정서 교부됩니다**. | | |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구 분 | 수신방법 | 확인자 서명 |
| 보험계약자 | @db2IsrtOthTel@ | 성명: (서명) |
| 피보험자 | @db2IsrdOthTel@ | 성명: (서명) |
| 보험수익자 | @db2BnfcOthTel@ | 성명: (서명) |

년 월 일

**해성손해사정 주식회사 귀중**

(담당자 : )